

1. 개정이유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제한을 완화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운영위탁 기준 마련

- 1) 법률 개정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운영위탁 기준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시행 주기 및 시행 항목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운영위탁 계약 갱신 시 해당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운영위탁 기준을 통해 수탁자 자격 및 일정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3)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이 높아지고, 운영위탁 기준이 마련되어 적절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운영이 위탁될 것으로 기대

나.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기준 개선

- 1) 정신재활시설의 신속한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의 설치를 도모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 구비 공간에서 제외하고, 타 사회복지시설 중 유사한 시설을 기준으로 면적규정을 완화하며, 이용정원 개념을 폐지하여 이용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유도함. 또한 정신재활시설 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입소형 시설은 입소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확충의 용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정신재활시설의 유연한 설치·운영기준을 통해 기존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신질환자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확대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한정적이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이 어렵고, 다양한 수련사례 접근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종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추가함

3) 수련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이 용이해질 것

으로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제21조의 2제1항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 정신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부지

나.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건물

제1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소정원

별표 7에 제1호바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은 식당 및 조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7 제3호가) 중 “3.3제곱미터”를 “2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란 제3호가) 중 “3.3제곱미터”를 “2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을 “입소정원”으로, “입소 또는 이용하계”를 “입소하계”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입소시설은 입소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공립 정신병원 운영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교부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설개요	시설의 명칭		사업종별	
	시설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정원	입소	명
시설설비	대지 m ²	연면적의 합계 m ²		
직원	총인원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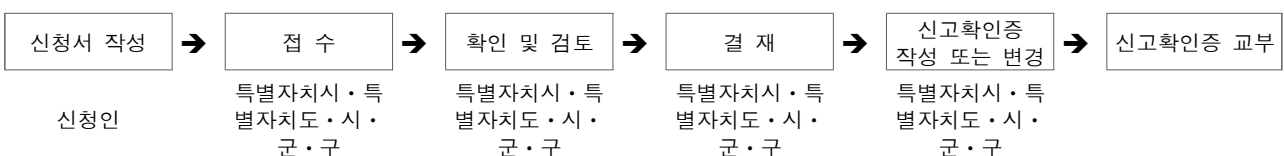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사업계획서·수지에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기관 및 수련과정) ①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u>정신건강복지센터</u> ,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3. ----- ----- <u>정신건강복지센터</u>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u>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u>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u>자살예방센터</u>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u>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u>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 정신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

<신 설>

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위
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
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
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
문의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
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
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
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
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

<신 설>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② (생략)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	<u>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u> 4. 「<u>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지방의료원</u> 5. 「<u>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u>」 제7조에 따른 <u>보훈병원</u>(「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u>해당한다)</u> <u>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u> <u>가.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부지</u> <u>나.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건물</u>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입소정원
5.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2 - 3855